##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2-56 호

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'우정사업본부 3PL사업' 위탁 운영기관 및 위탁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2일

**우 정 사 업 본 부 장**

### 1. 위탁 운영기관

가. 법인명 : (재) 우체국물류지원단

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93(자양2동 680-65)

### 2. 위탁 업무범위

가. 우정사업본부의 3PL사업 운영

1) 입점업체 상품의 입고·보관·출고·재고관리

2) 운영요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

3) 정보시스템(Post-Hub, WMS, DPS, RF터미널)운용 및 운용요원 교육

4)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택배 물량 확보

나. 부대업무

1)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시설 관리

2) 업무프로세스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등

### 부칙

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-39호(2005. 11. 9.)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-45호(2008. 10. 29.)는 폐지한다.